「구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Ⅰ. 심사경과

1. **발의일자**: 2026년 10월 6일
2. **발 의 자**: 이탕모 의원
3. **찬 성 자**: 김영태·김재우·김정도·김지식·박윤경·유승헌·이정희·장진호 의원(8인)
4. **회부일자**: 2026년 10월 7일
5. **상정일자**: 2026년 10월 14일
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Ⅱ. 제안 설명의 요지

1. 제안 설명자: 이 탕 모 의원

2. 제안이유

○ 국내·외 각 분야에서 인지도와 전문성을 갖춘 저명인사를 구미시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브랜드 가치와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고, 홍보대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임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나. 홍보대사 운영, 위촉 및 임기, 해촉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5조)
다. 의회 의견 청취 및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라.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8조)
마. 보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기　　타: 조례안 예고(2026.10.7. ~ 10.12.) 결과 의견없음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 홍보대사의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미시의 브랜드 가치와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다양한 분야의 인적 자원을 시정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.

- 다만, 제정 취지가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홍보대사의 전문성과 활동 분야를 고려하여 관광·축제·투자유치 등과 연계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, 온라인 홍보 등 시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활동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.

- 또한 위촉이 실질적인 도시 홍보 성과로 이어지도록 활동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　　략

Ⅴ. 토　론　요　지: 없　　음

Ⅵ. 소수의견의 요지: 없　　음

Ⅶ. 심　사　결　과: 원안가결